

# 출판저작물을 스캔하여 판매 중인 중고장터 게시물



교과서 등의 출판저작물을  
스캔하여 판매 중인  
중고장터 게시물,  
**저작권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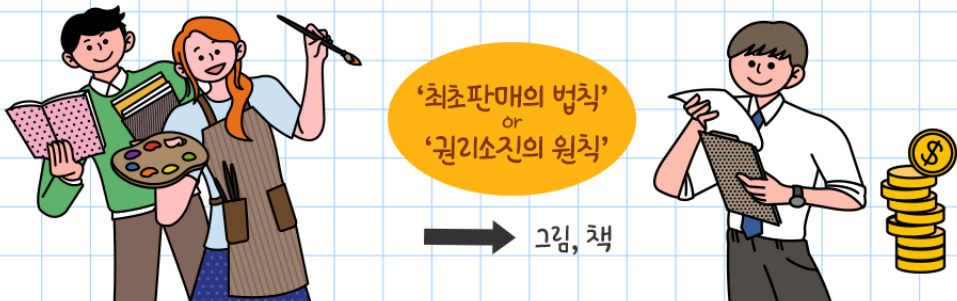
시정권고 사례를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쉽고 흥미롭게 알려드릴게요!



자연과학대학 교양 과학 수업을 수강신청한 **이대학 씨**.  
필요한 교재를 중고로 구입하고자 들어간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매우 저렴한 스캔본**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멋대로 복사한 파일을 구매해도 되는 건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보는 중고거래

중고거래 시, 저작자의 배포권이 (최초)판매와 동시에 소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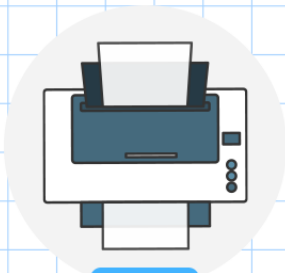


**배포권**은 본래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물건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즉, 중고거래는 저작물이 화체된 물건(책, 그림)을 적법한  
거래로 소유한 사람이 그 소유물에 대해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이 없습니다.

# 저작권법에서 보는 스캔 파일 판매

스캔 파일을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다음에 해당



복제



전송(공중송신)

복제권·전송권 또한 저작자의  
저작권재산권 배포권과 같은

‘최초판매의 원칙’  
적용 X

저작자가 직접, 또는 허락을 받고 만들어낸 적법한  
복제물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 **복제권 침해**가 되며,  
그 복제물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전송권 침해**입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면?



다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책 전체를 스캔하여 태블릿에 담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입한 책을 집안에서 스캔하여 파일로 만들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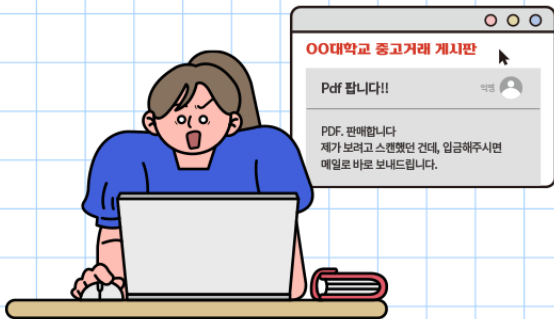
영리 목적의 전송 또는 배포에 해당,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벗어남!

하지만 스캔한 파일을 중고장터 등에서 판매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한편, 두꺼운 책을 손쉽게 스캔하기 위해 전문 업체 등에 작업을 맡길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제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 또한 사적 복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 저작권법에서 보는 스캔 파일 판매글



불법복제물의 판매글 =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



Why?

게시 목적 자체가  
불법복제물 유료로 전송하여  
영리를 얻고자 하는 목적

판매글 자체에서 불법복제물을 내려받을 수는 없지만, 기재된 정보에 따라 판매자와 연락하고 불법복제물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를 “불법복제물등”으로 통칭하여 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위와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이

심의 대상 게시물이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점

02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 즉 교과서와 참고서 등의 출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게시물의 삭제·전송중단 및 게시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였습니다.

교과서 등의 출판저작물을 스캔하여  
판매 중인 중고장터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저작권 보호 인식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깨끗한 중고거래 시장을 만들어보아요!**